

파주시 환경통합센터 '탄소중립팀장' 채용계획 공고

파주시 환경통합센터 (탄소중립팀장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
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5년 8월 13일

파주시 환경통합센터장

1.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

응시분야	채용직급	인원	직무내용	비고
탄소중립 팀	팀장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파주시 탄소중립 정책 지원(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작성,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등)탄소중립 포럼 구성 및 운영탄소중립 시민 캠페인 등	계약기간 (채용일~3년)

※ 채용 기간 : 2025. 9. 01. ~ 2028. 8. 31(3년)

※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위탁운영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채용근거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8조
- 「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 제34조

3. 응시 자격

가. 공통요건

- 결격사유 : 파주시 환경통합센터 운영규정에 따름
 - 1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 - 2) 범죄에 연류되어 기소된자
- 응시연령 : 만 20세 이상(공고일 기준)
- 성 별 :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채용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한 자

나. 응시자격 요건(공고일 기준)

-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
 - 1) 환경 분야 전공자로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
 - 2) 대기환경기사 또는 온실가스관리기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
- ※ 관련 분야 : 환경, 에너지, 기후변화, 탄소중립 및 관련 분야 근무 경력

- 해당분야 : 환경/에너지/기후변화/ 탄소중립

※ 이외 일반 환경(대기·수질·생태 등) 분야는 인정되지 않음

- 실무경력 인정범위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대학 연구소, 민간기업에서 해당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※ 이외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

4. 근무조건 및 보수

- 가. 근무시간 : 주 5일 40시간 근무(주말 근무 가능자)
- 나. 보수기준 : 공무원 7급 상당
- 다. 근무장소 : 파주시 환경통합센터(파주시 삼학로 551, 운정호수공원 내)
※ 건물 리모델링 기간에는 파주시청 환경동 근무 예정

5. 채용방법 및 일정

- 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응시자격 적합 여부 심사

※ 응시자격 적합자는 서류전형 합격, 합격자 통보 및 면접시간·장소는 개별통지

- 나. 2차 시험(면접전형)

- 면접방법 : 질의응답을 통한 역량 면접

※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에 대해 면접을 통한 평가 실시

※ 센터장은 인사위원회를 조직하여 면접을 시행할 수 있음

- 다. 공고 및 접수, 면접 일정

- 공고 및 접수 : 2025.08.13 ~ 08.22(10일간)

- 이메일접수처 : joanne.cho@coophangang.kr

- 접수기한을 넘긴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.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: 2025. 8. 25일까지 개별통지

- 면접시험 일시 : 8월 26일(화) 오후 예정

- 면접시험 장소 :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, 더 스페이스타워 810호
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8. 29.(금)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

- 채용예정 : 2025. 9. 1.(월)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

JF

가. 제출서류

① 지원서 1부(소정 양식)

② 이력서 1부(소정 양식)

▶ **이력서 자격증란에 기재한 사항은 입증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**

③ 자기소개서 1부(소정 양식, 1매 이내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소정 양식, 2매 이내)

⑤ 응시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사본 1부

▶ **당해분야의 근무부서, 재직기간, 담당업무, 주당 근무시간,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,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 등)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급(근무기간 및 주당 근무시간 미기재 경력은 불인정)**

▶ **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**

(※ 담당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)

⑥ 최종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명서 등) 사본 1부

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(소정 양식)

⑧ 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 1부(소정 양식)

⑨ 서류전형 자격요건에 대한 본인의견서 1부(소정 양식)

⑩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(소정 양식)

▶ **학위요건 응시자인 경우 활용 서식으로 학위증, 최종학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학과명칭이 모호하여 관련 학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**

나.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
- 관련 분야 경력 · 자격 등 응시요건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입증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 · 결정하며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증내용 미비 등에 따른 경력 · 자격 불인정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제출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(응시원서 등)의 기재사항은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8. 기타 유의사항

- 파주시 환경통합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이 수탁 운영합니다.
- 채용 관련 사항의 미확인, 응시서류의 누락, 미비, 기재착오, 자격미비자의 응시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원서접수일 및 면접시행일 등 일정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,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공고 후 결격 사유 조회,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규정에 따라 정년은 60세(60세에 도달한 날)입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문의 : 사회적협동조합 한강(☎ 02-6956-0596)

[참고] 결격사유 :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24. 12. 31.] [법률 제20621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지방인 사제도과_총괄), 044-205-3342
행정안전부(지방인 사제도과_임용), 044-205-3347
행정안전부(지방인 사제도과_시험, 신규임용), 044-205-3346
행정안전부(지방인 사제도과_보수), 044-205-3353~3356
행정안전부(지방인 사제도과_복무 징계), 044-205-3357~3358

【연】 □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0. 3. 22., 2013. 8. 6., 2015. 12. 29., 2018. 10. 16., 2021. 1. 12., 2022. 12. 27., 2024. 3. 19., 2024. 12. 31.>>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[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](#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[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](#)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[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](#)에 규정된 죄
- 다. [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](#)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[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](#)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[「마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](#)에 따른 마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- 다. 벌금 미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[2024. 12. 31.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. 6. 29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.]